

문서번호	식품안전과-5195			
결재일자	2015.2.26.	시 민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안전과장
방침번호				보건기획관



2015년 가공식품 안전관리 계획

2015. 2

복 지 건 강 본 부
(식품안전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 참여 고려 사항	● 시민 : 유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무 □
	● 전문가 : 유 □ () 무 □
	● 음 브 즈 만 : 유 □ () 무 □
법령 및 기타 고려 사항	● 법령 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식품위생법 등) 무 □
	● 기타 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 자원 의 활 용	● 중앙부처 : 유 □ () 무 □
	● 민간단체 : 유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무 □
	● 기업 : 유 □ () 무 □
관계 기관 및 단체 협의	● 관계 기관 : 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 □
	● 민간 단체 : 유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 (보건환경연구원) 무 □
언론 홍보 계 획	● 홍보 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없음 □

목 차

I. 현 황	1
II. 2014년 주요추진성과	2
III. 2014년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IV. 2015년 가공식품안전 세부추진계획	5
1. 기획기동감시를 통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5
2. 식품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강화	7
3.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8
4.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관리	9
5.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10
6. 허위·과대광고 식품단속	11
7.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12
8.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13
9.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관리	14
V. 행정사항	15

2015년 가공식품 안전관리 계획

위해식품 감시활동 전개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I. 현 황

총 관리 업소수 : 65,832개소

○ 식품제조·가공업 등

(단위 : 개소)

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지제조업
14,254	2,249	11,893	15	97

○ 식품판매업

(단위 : 개소)

계	식품소분업	식용얼음	식품자동 판매기	유통전문 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23,975	2,051	56	7,048	2,505	821	10,745	749

○ 건강기능식품·식품운반업·식품냉동·냉장업 등 (단위 : 개소)

계	건강기능식품				식품운반업	식품냉동·냉장업
	소 계	수입업	일반판매업	유통전문 판매업		
27,603	27,285	1,992	24,186	1,107	310	8

□ 관련 직능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대표자	서울시 지회구성 여부	회원수(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시밀리)
				전국	서울시		
1	(사)한국떡류식품 가공협회	김재현	구성	18,500	2,100	성북구 안암로 7길 35 (안암동4가)	929-2434 (921-6509)
2	(사)한국압착식용유자 고추가공업 중앙회	이상규	구성	10,000	1,050	성동구 마장로 31길1 (마장동)우일빌딩 302호	2294-2269 (2297-1857)
3	(사)한국추출 가공식품업중앙회	김용덕	구성	12,000	2,500	구로구 공원로6나길 12 (구로동)경방빌딩2층	2631-7313 (2631-7317)
4	서울·경기 두부류 및 묵류 제조업협동조합	노정호	구성	2,500	240 (서울·경기)	마포구 월드컵북로 4길 235 (동교동)	333-2986 (333-2988)
5	(사)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양주환	미구성	157	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관교로 700	031-6282300 (592-9302)
6	(사)한국면류공업 협동조합	경정수	미구성	56	4	중구 을지로 148 (을지로3가)	2273-3428 (2266-3996)

Ⅱ. 2014년 주요추진성과

주요추진성과

■ 시민단체 참여 민·관합동 식품안전 지도·점검

-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 : 862개소 점검/47개소 위반(위반율 5.5%)
 - 위반내역 : 시설물멸실18, 건강진단7, 영업자준수사항8, 기타14
 - 처분내역 : 영업소폐쇄15, 영업정지12, 품목정지4, 과태료10, 기타6
- ※ '13년도 1,393개소 점검/76개소 위반(위반율 5.5%)으로 위반율 변동은 없으나 점검업소 및 위반업소 실적은 감소【설명절 점검:'13년 515개소(10일간)→'14년 93개소(5일간)】

시민다소비식품 및 유해물질 대상식품 안전성 검사

◆ 수거목표 19,000건 대비 19,644건 식품수거로 달성률 100%

- 식품수거 : 19,644건 (유해물질 대상식품 255건 포함)
- 부적합 : 62건 (부적합률 0.3%)

※ '13년도 17,515건 수거/46건 부적합(부적합률 0.26%) 대비 부적합률 0.04%증가

허위·과대광고 식품 단속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 4,391건 / 488건 위반 (위반율 11%)

- 위반내역 : 질병치료효과·약품혼동표현 196, 사실과다르거나 과장된표현 17, 기타 275
- 조치내역 : 영업(품목)정지 125, 시정명령 7, 고발 136, 기타 220

※ '14년도 2,186건 모니터링 / 428건 위반(위반율 19.6%) 대비 위반율 8.6%감소

부적합제품 유통 확산 방지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동의업소 423개소 확보

- 대상업소 : 기타식품판매업소 및 중·소형 마트
- 설치 동의서 제출업소 중 300개소 2015년 시스템 설치 추진 예정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란?

-부적합 통보된 회수대상 식품 정보가 유통업체 매장의 POS 단말기로 전파되어 해당제품 결제시 매장 계산대에서 회수대상식품임을 알려 위해식품의 판매를 자동으로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도·계몽

◆ 식품안전 지도·계몽 : 134개 시장 8,838개소

◆ 찾아가는 식품위생 교육 : 15회 478명

◆ 위생관리 매뉴얼 및 위생용품 지원

- 위생관리 매뉴얼 6,000부 배포 / 위생복 및 위생모 1,100개 제작 지원

Ⅲ. 2014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시민다소비식품 수거시 실적위주 건수 편중

- 2014년부터 식약처로부터 지자체별 식품수거 목표량이 시달됨에 따라 목표량 달성을 위한 실적위주의 식품수거 편중.

【수거목표량: 19,000건('14년) → 18,000건('15년)】

▶ 실적위주 식품수거 지양을 위해 테마별 (식품유형별 표본검사, 제조가공, 유통, 소비단계) 수거검사로 전환

② 허위·과대광고 줄지않아 소비자 불신 여전

-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어도 처벌수위가 낮아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신 여전
- '뺏다방'등 노인상대 사기범죄의 경우 낯이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해가며 행해지고 있어 적발에 어려움 발생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가 필요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공조필요

③ GMO식품 표시면제를 두고 있는 현행 표시제도 개선 필요

-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행법상 식용유, 전분당 등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소멸되어 남아있지 않는 관계로 GMO 표시면제 식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 GMO 식품임에도 GMO 식품임을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GMO식품 완전표시제 및 비의도적 혼입치 1%이내 등 표시기준 법률 개정 건의

4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대부분 식품정보 표시 취약

- 전통시장 내 떡, 반찬류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현행법상 업소명,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식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상인들이 대부분 생계형 영세업소로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부족등으로 여전히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품 등의 표시에 있어 취약한 실정

▶ 찾아가는 식품안전 교육 강화 및 식품에 대한 정보를 일괄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 제작지원

IV. 2015년 가공식품안전 세부추진계획

1 기획·기동감시를 통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및 목적

- 시민과 함께 위해식품 감시활동 전개로 단속의 투명성 확보
- 유통식품에 대한 정기 수거검사 실시로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 대 상 : 식품제조·즉석·판매업소 및 유통식품 등
 - 부정·불량식품 사전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자치구 교차 지도점검
 - 유해물질 안전관리(곰팡이 독소, 미생물) 및 유통 판매 식품 수거 검사 실시

□ '14년 추진실적

- 식품제조업소 등 민·관 합동점검 : 점검 862개소 / 위반 47개소

- 위반내용 : 시설물멸실18, 건강진단7, 영업자준수사항8, 기타14
- 행정처분 : 영업소폐쇄15, 영업정지12, 품목정지4, 과태료10, 기타6

○ **시민다소비식품 및 유해물질 대상식품 수거검사**

- 총 19,644건 수거검사(유해물질 대상식품 255건 포함), 부적합 62건 (부적합률 0.3%)
 - ┌ 가공식품 등 : 수거건수 17,520건 / 부적합 48건 (부적합률 0.27%)
 - └ 기타(식품접객업, 기구및용기포장) : 수거건수 2,124건 / 부적합 14건 (부적합률 0.66%)

□ **'15년 추진계획**

'15년 달라지는 사항('14년 대비)

▶ **시민다소비식품 등 수거 방법 개선**

- 실적 위주의 식품수거를 지양하고 테마별 식품수거로 전환
(‘14년 무작위 수거에서 → ‘15년 식품유형별 표본검사, 제조가공, 유통, 소비단계 등 테마별 수거)
- 식품수거 목표건수 하향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수거 목표 지정)
(‘14년 19,000건에서 → ‘15년 18,000건으로 1,000건 하향 조정)

- 설 명절 성수식품 지도·점검 : 1월~2월
- 개학대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 3월
- 식중독 예방관련 김밥·도시락 제조업소 지도·점검 : 4월
- 하절기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지도·점검 : 6월~7월
- 개학대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 8월~9월
- 추석 명절 성수식품 지도·점검 : 8월~9월
- 김장철 성수식품 지도·점검 : 11월
- 유통식품(시민다소비식품) 안전성검사 : 년중

□ **소요예산 : 135,106천원 (국비 43%, 시비 57%)**

2 식품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및 목적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품질관리능력을 평가 출입·검사·수거 등 차등관리
- 효율적인 위생관리로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향상 도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출입·검사·수거 등)
- 2015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III-3-1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안전관리)

○ 평가종류 : 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

○ 평가결과 등급구분

- 자율관리업체(151~20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
- 일반관리업체(90~15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
- 중점관리업체(0~ 89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

□ '14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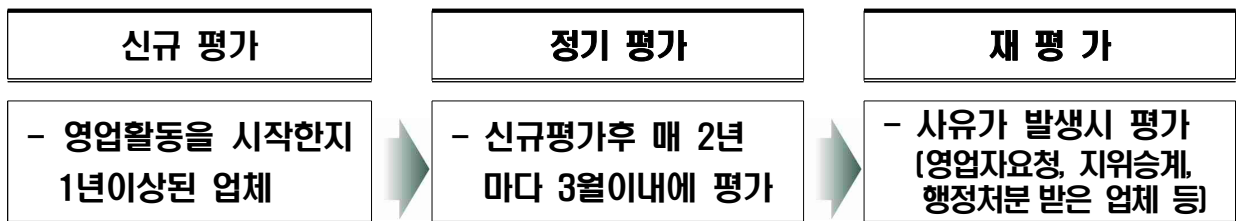
○ 위생관리등급평가 대상업체 : 1,487개소

- 평가업소 : 1,083개소 (자율 143, 일반 828, 중점 112)
- 미평가업소 : 404개소

※ 미평가사유 : 시기미도래, 장기 생산중단, 휴업 등

□ '15년 추진계획

○ 평가종류 및 평가시기 : 연중



○ 평가결과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자율관리업체 : 2년간 출입·검사면제, 위생시설개선 용자 우선지원
- 일반관리업체 : 출입검사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실시
- 중점관리업체 : 매년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3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추진배경 및 목적

-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등(OEM)의 사전 위생관리 강화
 -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위해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제거
-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허위·과대광고 사전 모니터링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4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식약처고시 제2014-11호)
 - 식품위생법 제22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0조 (출입·검사·수거 등)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OEM) 수입업체 사후관리
 - OEM 수입식품 수입영업자의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실시여부 확인
-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 한글 표시사항 등 식품표시기준 적정여부 집중점검
 - 허위·과대광고 행위 수시 모니터링 실시

'14년 추진실적

- 건강기능식품업체 지도점검 결과 : 총 8,496개소 / 위반 246개소
 - 위반내용 : 허위과대광고 및 무단폐업 등
-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 : 총 4,010개소 / 위반 284개소
 - 위반내용 : 위생교육미실시 및 무단폐업 등

'15년 추진계획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OEM) 수입업체 위생점검 실시여부 확인 : 연2회
- 수입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안전성 검사 실시 : 년중
-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등 : 년중

4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관리

□ 추진배경 및 목적

-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입·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가공식품등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 신뢰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제12조의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도·점검(년 2회 /상·하반기)
 - 콩가루 및 옥수수가루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 집단급식소(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제조·가공업체 및 유통 식품 수거·검사 목표 : 총 100건
 - 서울시 : 유통식품 25건
 - 자치구
 - ┌ 관내 제조업체 식품 50건 (자치구별 2건 이상)
 - └ 관내 음식점 식품 25건 (자치구별 1건 이상)

□ '14년 추진실적

- 관련식품 표시제도 지도·점검 : 점검업소수 408개소 (위반사항 없음)
- 유전자변형식품 수거·검사 : 총 검사건수 142건 (기준초과제품 없음)
 - 정성검사 : 122건 (검출 58건), 정량검사 : 20건 (검사결과 14건 / 0.01~0.40)

□ '15년 추진계획

- GMO식품 완전표시제 및 비의도적 혼입치 1% 이내 등 표시기준 법률 개정 건의
- 『GMO식품 안심 ZONE』 설치는 추후 생협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예정
- 소비자 알권리, 선택권 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유통·판매업체, 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한 관리방안 모색
- GMO식품 바로알기 홍보활동 전개
 - 공공기관 및 초·중·고교 어린이집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GMO식품 식별 방법 등 홍보물 제작·배포

5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

추진배경 및 목적

- 위해식품의 신속회수 조치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 식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판매 차단 및 영업자 회수조치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5조 (위해식품 등의 회수) / 동법 제72조제3항 (폐기처분 등)
- 회수구분 및 회수대상

구 분	강제회수	자진회수
내 용	정부기관 수거검사 및 단속결과에 따른 회수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회수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2조제3항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회수개시체	회수명령기관(지방청, 시·군·구)	영업자
행정처분	감면처분 불가	회수결과에 따라 감면처분 가능
회수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별표 18 ○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14년 추진실적

○ 위해식품 회수실적

구 분	회수건수	생산량 (kg)	회수계획량 (kg)	회수량 (kg)	회수율	회수율산정식
총 계	34건	2,633,773	1,233,669	1,326,484	78.4%	
회수지침 (개정후)	12건	2,470,211	1,233,669	1,233,660	99.9%	$(\text{회수량}/\text{회수계획량}) \times 100$
회수지침 (개정전)	22건	163,562	94,728	92,824	56.8%	$(\text{회수량}/\text{생산량}) \times 100$

※ 식품유형 : 과자류3, 소스류2, 기타가공품5, 음료류4, 건기2, 농산물7, 기타11

'15년 추진계획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 300개소
 - 대상업소 : 기타식품판매업소 및 중·소형 마트 중 시스템 설치동의업소
- 위해식품 발생시 유통판매 차단 및 신속회수 조치 명령
- 회수 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 실시

소요예산 : 56,100천원 (시비 100%)

6 허위·과대광고 식품단속

□ 추진배경 및 목적

-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전담요원 지정운영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 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 만연
 - 인터넷, 방송, 신문 등 광고매체 및 떼다방, 방문판매 등 집중점검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및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 인터넷, 신문, 방송 등 광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전담요원 지정 및 실버보안관 운영
- 「모니터링정보망협업시스템」 통한 과대광고 행위 신속조치
- 영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14년 추진실적

- 모니터링 : 4,391건(인터넷 4,206건, 민원 185건)
- 단속결과 : 488건 (영업정지 72건, 품목(류)정지5, 시정명령7, 영업정자 고발48, 고발136, 기타220)
- 예방홍보 : 97개소
 - 시 : 다단계판매사업자(60), 홈쇼핑(37), 자치구 : 통신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 '15년 추진계획

'15년 달라지는 사항('14년 대비)

- ▶ '떼다방'등 노인상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
 - 시니어감시원 125명 → 실버보안관 145명 (서울시 20명 신규위촉)
 - 실버보안관 위촉 및 발대식 개최 : 3월

- 허위·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 : 연중
 -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운영 : 총 27명 (서울시2명, 자치구별1명)

□ 소요예산 : 126,000천원 (국 22%, 시 78%)

7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추진배경 및 목적

- 단속 행정보다 예방적 식품안전 지도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필요
- 실질적 지원위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식품안전관리지침 (위생취약분야, 전통시장 안전관리)
- 사업대상 : 134개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14년 추진실적

- 5개 선도시장 식품안전 전담관리원 지정운영
 - 지정인원 : 10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운영기간 : 6월~9월 / 운영반편성 : 2인1조 5개반 / 활동내용 : 식품안전 지도·계몽
 - ※ 5개선도시장 : 정릉시장, 영천시장, 신창시장, 신원시장, 길동시장
- 식품안전 지도·계몽 : 134개 시장 8,838개소 자율점검표 배포
- 찾아가는 식품안전 교육 : 공릉도깨비시장 등 15개시장 / 15회 478명
- 위생관리매뉴얼 제작·배부 : 6,000부
- 5개선도시장 및 식품안전교육 참여자 위생용품 제작·배부
 - 위생복 및 위생모 1,100개

'15년 추진계획

'15년 달라지는 사항('14년 대비)

-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일괄표지판 제작 지원
 - 업소명,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일괄표지판 제작 지원

-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계획 수립 : 5월
- 위생관리매뉴얼 및 위생용품 제작·배부 : 6~7월
- 식품안전지도·계몽 (자율점검표 배포 등) : 6~10월

소요예산 : 24,600천원 (시 100%)

8 식품자동판매기 관리

추진배경 및 목적

-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불법운영 자판기 정비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자동판매기 안전관리)
- 추진대상 : 7,048대
- 추진내용 : 내부 청결상태 점검 및 수거·검사 병행

'14년 추진실적

-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실시 : 점검 3,821대 (위반658대)
 - 위반내역 : 무신고39, 시설물멸실295, 영업자준수사항306, 기타18
 - 조치내역 : 신고유도39, 영업소폐쇄295, 행정지도324
- 식품자동판매기 수거검사 : 수거건수 103건 (부적합6건)
 - 위반내역 : 세균수 기준초과 / 조치내역 : 영업정지

'15년 추진계획

-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계획수립 : 5월
-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 5월, 10월
 - 지도점검 : 년 2회 / 상·하반기 (자치구)
 - 점검방법 : 단계별 추진
 - 1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위생지도
 - 2차 : 1차 점검 시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공무원 점검
 - 3차 : 개선여부 확인(시정 미이행 : 행정처분)
 - 수거검사 : 반기별 125건 (구별 5건 내외)

9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관리

추진배경 및 목적

-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사·조치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및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설치·운영
-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 활성화
 -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한 신고율 향상도모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식약청 고시 제2003-51호 2003.10.29.제정 / 제2014-101호, 2014.3.11.개정)

○ 부정·불량식품 민원업무 관리

-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설치·운영 [식약처]
 - 식약처 및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구축운영
- ※ 예산 : 26,000천원 (일반 300천원 / 기금 25,700천원) - 자치구예산

'14년 추진실적

- 부정·불량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 45건 / 4,440천원
 - 일반식품 : 27건 2,500천원 / 건기식품 : 18건 1,940천원

'15년 추진계획

-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접수시 신속 조사 및 처리 : 연중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운영 : 연중

V. 행정 사항

식품안전과

- 종합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민·관 합동단속 총괄
- 각종 분기보, 반기보, 연보 등 자료취합 및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 시민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 의뢰시 신속처리

자치구

- 자체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민·관 합동단속시 직원차출 협조
- 각종 분기보, 반기보, 연보 등 추진실적 제출

- 붙임 : 1. 2015년 자치구별 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목표 1부.
2. 비의도적 유해물질(곰팡이독소) 안전관리 수거 품목 현황 1부.
3. 유해물질(미생물) 안전관리 수거 품목 현황 1부. 끝.